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8. 8 선고 2023가단13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류한호

피고B

변론 종결2024. 7. 11.

판결 선고2024. 8. 8.

주 문

-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11.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2. 11. 17.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144,4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144,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채무자 C(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515166), 2016. 4. 8.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그 무렵 인용되었다.1)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칭한다)의 소유자이던 D은 2005. 7. 10. 사망하였고, 피고 및 채무자, 소외 E, F, G, H 6인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상속지분 각 1/6).

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2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1.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채무자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은 등기정보센터, I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채무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으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상속분인 각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고 가등기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 나머지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5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대종중인 J파의 후손들 중 직계 7계조를 따로 모시는 소종계(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으로, 이 사건 제5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종중이다.

또한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은 피고가 부모님이 사망하시 전까지 10년간 직접 모셨고, 이후에도 선조의 제사 주관, 묘소 관리를 모두 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들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이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및 공동상속인들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부동산은 이 사건 종중이 선조의 묘소를 모시고 이를 관리할 목적으로 매수한 후에 망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5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6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고 이후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라고 선택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기여분 산정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악의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중 각 1/6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

별지

1) 위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6,937,071원 및 그 중 2,231,634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